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21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서천호·박덕흠·서명옥

이만희 · 최보윤 · 정점식

서지영 • 진종오 • 조은희

박충권 · 김용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,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,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,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, 농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 농·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, 농·어업 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 견이 있음.

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의2제1항, 제71조제1항, 제87조의2, 제99조의4제1항, 제105조제1항, 제10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	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
소득세의 감면) ① 축산에 사	소득세의 감면) ①
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	
(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	
"축사용지"라 한다) 소재지에	
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	
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	
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양도함	2030년 12월 31일
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	
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	
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	
다만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	
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	
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	
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	
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	
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	
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	
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	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	

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71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・초지・산 림지 · 어선 · 어업권 · 어업용 토지등・염전 또는 축사용지 (해당 농지・초지・산림지・어 선 · 어업권 · 어업용 토지등 ·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3제1항 에 따른 영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"이라 한다)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 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20

<u>.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1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
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
면) ①
<u>20</u>

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 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⑨ (생 략)
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·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
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

30년 12월 31일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
대한 비과세)
2030년 12월 31일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
①

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202 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 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취 득기간"이라 한다)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"이라 한다)을 취 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 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 ~ ⑧ (생 략)
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전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

<u>203</u>
0년 12월 31일
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세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8) ①

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- 1. ~ 6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
- ① (생 략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9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,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.
- 1. ~ 22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
•	
	<u>2030년 1</u>
2월 31일	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	
제106조(부가가치세의	면제 등)
① (현행과 같음)	
②	
	·
<u>2030</u>	년 12월
31일	
<u>.</u>	
1. ~ 22. (현행과 같음	2)
③ ~ ⑤ (현행과 같음	<u> </u>